

원격수업 저작물 이용 가이드

2020. 3.

상 명 대 학 교
(교육미디어혁신센터)

목 차

1.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및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요약)	1
2. 기타 저작물 이용 방법	6
3.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	9

1.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및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(요약)

1. 수업목적 보상금 정의

가.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,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

나.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“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” 하도록 하고,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(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)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것을 “수업목적보상금제도” 라고 함

※ 서울캠퍼스(학사운영팀), 천안캠퍼스(교무팀)에서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포괄방식(학생 1인당 연간 기준액: 일반대 1,300원)으로 납부하고 있음

2. 수업의 주체 및 범위

가. 수업의 주체: ‘학교 및 교육기관’ 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(전임교원,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 등)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(휴학생 제외)

나.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: ‘수업목적’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‘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’ 으로 한정되며, “수업목적” 이란 해당 ‘학교 및 교육기관’ 의 ‘재학생’ 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, 감독하의 대면 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

3.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

-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함.

구분	이용 요건
이용대상저작물	- 공표된 모든 저작물
이용주체	-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 (학부모,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)
이용방법	- 복제, 배포공연, 전시, 공중송신(방송·전송·디지털음성송신 등)

구분	이용 요건
이용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 - 수업 전후, 연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-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
이용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
일부분판단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단,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
허용되지않는 이용 (이용허락 대상요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 -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, 참고서(워크북 등 포함)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 - 교원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 - 도서, 간행물,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 -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,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 - 판매되는 음원·영상 저작물을 시디롬(CD-ROM),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
저작인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, 편곡,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,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. 다만,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
출처표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물의 명칭, 저작자, 수록매체(도서명, 홈페이지 주소 등),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(불법 저작물)은 이용할 수 없음

4.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방법 및 허용범위

가. 이용방법

- 1)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‘복제, 배포, 공연, 전시 또는 공중 송신’에 의한 이용이며, 대여 및 2차 저작물 작성은 해당되지 않음
- 2)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

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
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됨

- 3) ‘교육을 받는 자’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‘복제 또는 전송만’을
할수 있음

나.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

- 1) 수업목적 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: ‘일부분의 이용’ 과 ‘필요한 최소한의 범위’
-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‘일부분을 이용’ 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
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
를 이용할 수 있음

※ 공정 이용(Fair use)이라 함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
경우를 말합니다.

2) 어문 저작물

- 논문, 소설, 수필,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, 전체의 1% 이내를 이용하는 것은
공정이용의 대상,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%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
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- ☞ **해설: 전체의 10% 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
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.**
- 수업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의 논문 한편 또는 대학교재, 학술교재, 전문서적 등의 1장
(1단원)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가능. 그러나 2장 또는 10% 이상을 이용하는
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-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여 단행본의
일부,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,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, 그래
프,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음.
-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해야 하며, 교육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
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
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함
- 학술서적이거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(PT강의자료 포함)을

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

-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 자료를 제작하여 복제,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

3) 음악저작물

- 음악저작물 전체의 5%이내(최대 30초)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, 음악저작물 전체의 20%(최대 5분 이내)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
☞ 해설: 전체의 20% 미만(최대 5분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.

-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됨. 다만,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,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
- ‘음악저작물’의 경우,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(악곡, 악보)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, 공연을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 -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, 배포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가능

4) 영상저작물

- 영상저작물 전체의 5%이내(최대 30초)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, 영상저작물 전체의 20%(15분)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. 단,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

☞ 해설: 전체의 20% 미만(최대 15분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에 의한 적법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.

-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, PT에 삽입하여 활용하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가능
-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
※ 동시중계방송: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

5) 이미지 저작물

-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 가능

6) 참고사항

-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(일반) 저작물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- “수업 목적” 이란 해당 ‘학교 및 교육기관’ 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.
 - ‘교과과정 이외의 학습’ 또는 ‘일반인 대상 특별 강좌’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“수업목적” 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가이드라인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,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.
 -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-MOOC, KOCW,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,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‘학교 및 교육기관’ 의 고시특강 등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,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.
-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“수업 목적” 에 포함되지 않음.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. 다만,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(저작권법 제30조)
 - ‘프로그램 저작물’ 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 참조

2. 기타 저작물 이용 방법

1. 기타 저작물

가. 외국 저작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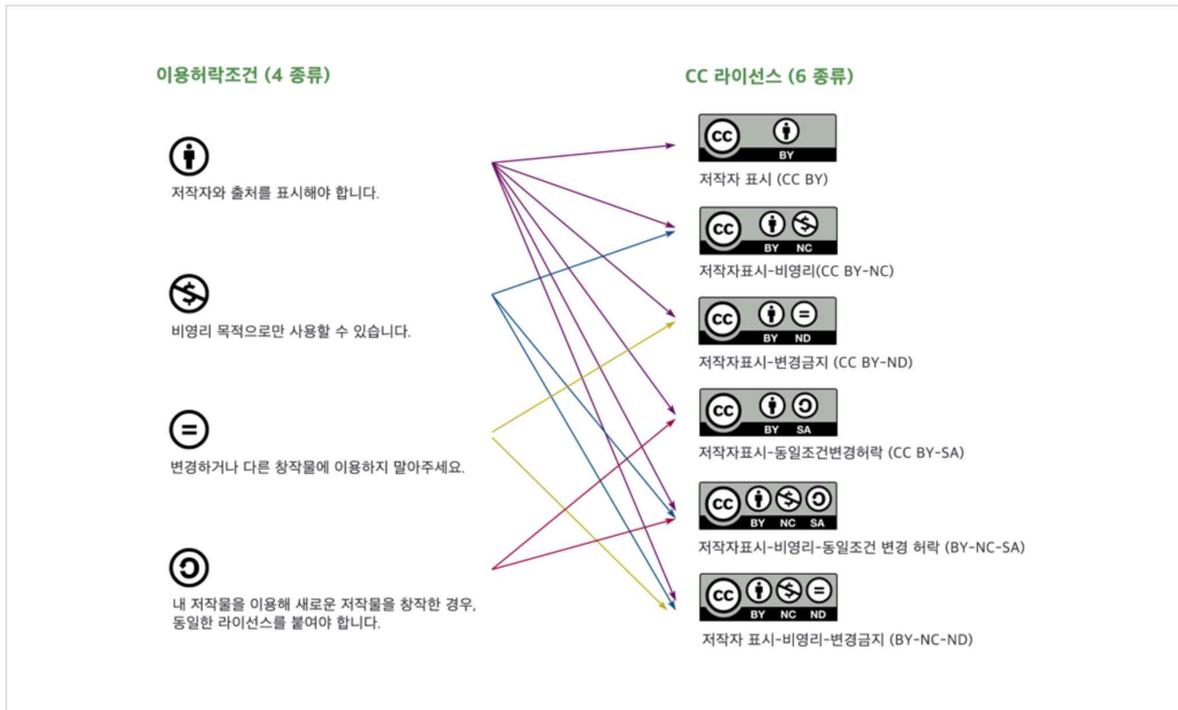
-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2)~5)와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저작물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.

나. 공유저작물(Public Domain)

-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공유저작물은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함

다.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 표시 저작물

-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조건에 관한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L표시를 한 저작물은 해당 이용조건 및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
- 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 개가 있으며,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함



이용허락조건	
	<p>저작자 표시 (Attribution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작자의 이름,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.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.
	<p>비영리 (Noncommercial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,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.
	<p>변경금지 (No Derivative Works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.
	<p>동일조건변경허락(Share Alike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,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
CC 라이선스 종류	
	<p>저작자 표시 (CC BY)</p> <p>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. (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.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,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	<p>저작자표시-비영리(CC BY-NC)</p> <p>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. (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.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CC 라이선스 종류	
	<p>저작자표시-변경금지 (CC BY-ND) 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•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.
	<p>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(CC BY-SA) 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•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. •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. (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
	<p>저작자표시-비영리-동일조건 변경 허락 (BY-NC-SA) 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•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. (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•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.
	<p>저작자 표시-비영리-변경금지 (BY-NC-ND) 가능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.) <p>제한된 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• 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,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.

라. 폰트 사용

- 폰트(font)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므로 **무료 폰트 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매한 유료 폰트를 사용**하고 모든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작권 위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

3. 저작물 출처 표기 방법

강좌 개발에 기본적으로 삽입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.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(출처, 저자, 일자 등)를 저작권법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해당화면에 표시함.

전문서적, 학술논문 이용시

- 저자명, 책 또는 논문 제목, 발행기관, (판수), 발행연도, (해당 페이지)

ex) 김윤명, **이러닝과 저작권**, 커뮤니케이션 북스, 2013, 75쪽

번역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시

- 번역자, 번역물의 제목, 발행기관, 발행년도, (해당 페이지), (원저자명), (원 저작물명), (원 저작물 발행기관), (발행년도 표시)

ex) 박민식, **포스트모더니티의 새로운 조건**, 한물미디어, 2011, 42쪽, 데이비드

연설의 이용시

- 연설자성명, 연설이 행해진 때, 장소명시

ex) 스티브잡스, 2005, 스탠포드 졸업식

신문, 연속 간행물의 기사, 논설, 해설의 이용 시

- (기자명), 기사제목, 신문 혹은 연속 간행물 이름, 발행년월일, (해당 페이지 혹은 URL)

ex) 윤대원, **SW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세분류 마련**, 전자신문, 2014.9.18.,
<http://www.etnews.com/20140917000458>

영상 저작물의 이용 시

- (감독성명), 영상 저작물의 제목, 제작사, 제작년도

ex) 최재영, **다큐 오늘**, EBS, 2014

인터넷 자료의 이용시

- 저자명, 제목, 발행년도, URL 등 표시, (이용일자)

ex)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**아르코예술-인문콘서트**, 2014, <http://www.arko.or.kr/>, 2014.9